



## TaxNewsFlash - Transfer Pricing

[Website](#) | [Archive](#) | [Contact](#)

### Transfer Pricing Newsletter

삼성 KPMG 이전가격본부(TP)는 글로벌 이전가격 이슈를 공유하고자 KPMG 에서 발간되는 TaxNewsFlash 및 Bloomberg 에서 발간되는 BNA Report 를 한국어로 요약하여 월 2회 제공합니다.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칠레: 승인된 APA의 이전가격산정 방법을 관세에도 적용](#)

칠레의 관세 규정은 기존 승인된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 (Advance Pricing Agreement, 이하 "APA") 상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을 통해 결정된 거래 가격을 칠레로 수입되는 상품의 가치산정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최근 개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APA로 결정된 정상가격과 수입 물품의 부과 관세가 일치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 **\*APA 개요**

APA는 납세자의 신청과 과세당국의 승인이라는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APA 승인을 받은 납세자는 APA 대상기간 동안 승인 당시 설정된 전제조건을 충족하는 한, 승인된 방법을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인정받아 사용하게 됩니다. APA에는 납세자가 소재하는 국가들의 과세당국간 협의가 필요한 쌍방 APA와 협의 없이 한쪽 과세당국과 체결하는 일방 APA가 있습니다.

APA로 인한 기대혜택으로는 이전가격 세제상의 불확실성 제거, 이중과세문제 제거(쌍방APA에 한정), APA대상거래에 대한 세무조사

삼성 KPMG 이전가격본부

10 September 2018

#### KEY CONTACTS

[강길원 전무이사\(본부장\)](#)

(Tel: 02-2112-0907)

[김상훈 상무이사](#)

(Tel: 02-2112-7939)

[백승목 상무이사](#)

(Tel: 02-2112-0982)

[김태준 상무이사](#)

(Tel: 02-2112-0696)

면제(승인조건 충족 시), 이전가격과 관련된 합리적 의사결정 가능 등이 있습니다.

### 호주: APA 처리 동향(Bloomberg Tax, 2018.08.23, p.643)

최근 호주 과세당국(Australian Taxation Office, 이하 "ATO")에 따르면 현재 유효한 APA의 수가 과거 대비 크게 감소하였지만 호주 소재 다국적 기업들은 조세 확실성(tax certainty)을 확보하기 위해 여전히 APA를 신청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금년 6월 30일 기준으로, 호주 내 유효한 쌍방 APA의 수는 110건으로, 가장 최근 자료인 2013-2014 과세연도의 175건과 비교하면 약 63% 수준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EY의 오세아니아 지역 이전가격본부장인 Anthony Seve는 ATO의 APA 신청서 접수 기준이 과거 대비 엄격해진 점을 주요 사유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PA 신청자는 APA 신청서 상의 납세자의 포지션을 뒷받침하는 명백한 증거를 제시할 필요성이 증가되었습니다. KPMG Sydney의 파트너, Jeremy Capes는 이에 동의하며 ATO는 APA가 납세자의 권리가 아니라 특권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Bloomberg Tax에 전했습니다.

### **전략적인 APA**

그럼에도 불구하고, Seve 본부장과 Capes 파트너는 APA가 갖는 이점을 고려하였을 때, 다국적기업의 세무 및 사업 위험 관리에 있어 호주의 APA 프로그램이 아직까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APA가 개별 세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 다국적기업의 관리방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과세당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회사 이미지를 제고시키는 이점을 고려하였을 때 ATO가 신청기업의 전체적인 가치사슬 및 지배구조를 고려하는 등, APA에 대해 보다 전체론적인 접근방식을 적용하는 것에 대응하여, 다국적기업들은 APA 신청 시 더욱 전략적으로 준비하여 접근하고 있습니다.

### **ATO의 관점**

ATO의 국제부문 부청장인 Mark Konza는 ATO가 최신 국제조세 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APA 접근방식으로 다국적기업이 비과세 소득을 호주 외로 반출하는 것을 겨냥한 우회이익세(Diverted Profits Tax, 이하 "DPT") 및 다국적 조세회피 방지법(Multinational Anti-

Avoidance Legislation)을 신설하였다고 지난 5월 시드니에서 열린 이전가격 컨퍼런스에서 밝혔습니다. 그에 따르면, 개선된 APA 접근 방법에 의하여, 국제거래의 가격을 개별적으로 접근하던 과거의 방식에서 탈피하여 전체적인 가치사슬과 경제주체를 이해하는 전체론적인 방법으로 선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ATO는 APA 절차의 일부로 복합적인 세무 이슈를 고려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우회이익세(DPT)**

Konza 부청장은 ATO가 도입한 새로운 접근방법을 적용하여, 올바른 이전가격 적용을 희망하는 납세자의 경우 상기된 DPT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보장하는 내용을 APA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하며, 실제로 이러한 사례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APA 체결 시 ATO가 호주 국내세법과 복잡한 이전가격 상황에 대한 실무적인 해법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ATO의 전체론적인 접근방법이 납세자들에게 어려움을 안겨주고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Capes 파트너에 의하면, OECD의 BEPS 프로젝트에 의해 ATO와 APA 체결 상대국이 글로벌 가치사슬과 가치기여에 대한 높은 이해가 요구됨에 따라 이러한 어려움이 더욱 현실화되었습니다.

### **체결기간의 장기화**

APA는 현재까지도 다국적기업에게 많은 이점을 제공하나, 이러한 관점변화로 인하여 체결까지 소요되는 시간의 장기화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ATO의 대변인에 따르면 쌍방 APA 신청서는 2014-15 과세연도의 20개월에서 최근 35개월로 증가되었으며 일방 APA 신청서는 같은 기간 12개월에서 최근 28개월로 증가되었다고 발표되었습니다. 이러한 처리기간의 증가는 시간이 장기간 소요될 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비용 증가로 이어져 자금이 풍부한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의 접근이 어려워졌습니다. 단, ATO는 APA 신청 수수료를 별도로 징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신규 도입 세제의 내부거래약정에 대한 영향 \(Bloomberg Tax, 20180809, p.604\)](#)**

말레이시아는 다국적기업의 내부거래에 대한 규정의 변경과 함께 곧 발효되는 판매 및 서비스세(Sales and Service Tax, 이하 "SST")에 대한 면제대상의 추가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국회는 해당 규정을 9월 초까지 입안하기 위해 이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새로 선출된 정부는 SST를 6%에서 0%로 조정하여 6월 1일부터 실질적으로 면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기존에 적용되던 상품 및 서비스세(Goods and Service Tax, 이하 "GST")을 7월 30일부터 전면 폐지되었습니다.

말레이시아가 SST 재도입을 준비하면서,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 대한 부과여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딜로이트 말레이시아의 Senturan Elalingam 전무에 따르면, 이전가격에 대한 변화 가능성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과거, 그룹 내 용역거래에 부과되는 서비스 세금은 없었으나, 현재 제안된 법안에 따르면 특수관계자간 용역거래에 대하여 서비스 세금이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룹 내 용역거래에 대해 서비스 세금을 적용할 경우, 이러한 용역에 대한 비용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으며 현재 체결된 용역 약정을 재검토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 **면제 대상**

관세당국이 제의한 SST의 면제대상으로는 생선이나 당근과 같은 기본적인 것뿐만 아니라 보일러에서 헬리콥터에 이르는 고가의 물품과 제조업자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원·부자재를 포함 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내에서는 SST의 경제적 영향에 대하여 찬반논쟁이 뜨거우나, SST가 포함하는 물품 및 용역의 범위가 GST보다는 좁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기존의 GST와 대비하여 소비자 및 산업에 대한 영향력이 낮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제조업**

수출되는 상품은 무역을 장려하기 위해 대체적으로 면세가 적용되나, 수입업자와 제조업자의 경우 신규 도입되는 세금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세당국은 SST의 면제 대상 중 많은 원·부자재를 포함하여 제안하였으며, 해당 입안이 통과될 경우 플라스틱 포장업, 비가공 은, 우드 펄릿, 생사원단 등 다양한 원·부자재에 대하여 SST가 면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일본: APA신청 증가 예상 (Bloomberg Tax, 20180809, p.604)

일본이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이하 "OECD")의 개정된 이전가격 규정을 도입함에 따라, 일본 소재 다국적기업들의 APA 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된 OECD 규정은 자동차,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제약혼합물에 대한 특허 등 이전가격 목적 상 가치 산정이 어려운 무형자산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미 다국적기업의 국가별 소득, 납부세금, 인력 등을 기록하도록 요구하는 국가별보고서를 도입하였습니다.

일본 APA 신청이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에게 흔히 있는 일이 되었으며, 특히 자동차제조사들이 조세 분쟁을 해결하는 용도로 AP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일본 국세청에 APA를 신청하는 제약회사와 정보기술 기업들의 증가를 확인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일본-미국 APA**

일본의 APA 상대로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는 미국이며, 일본의 다국적 기업들은 거래순이익률방법(Transactional Net Margin Method 이하 "TNMM")을 가장 선호하고 있습니다.

TNMM은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특수관계자의 이익률과, 유사한 거래에서 독립 당사자 간 발생하는 이익률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원가, 판매 또는 자산과 같은 적절한 기준에 따라 이익률을 산출합니다.

### **APA 수요**

일본은 가장 APA에 친화적인 나라들 중 하나이며, 매년 100개 이상의 APA 신청이 접수되면서 지난 10년 동안 가장 많은 수의 APA를 체결하였습니다.

일본 국세청(National Tax Agency, 이하 "NTA")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2016년 쌍방 APA의 신청 건수는 131건으로 최근 신청된 150건보다 약간 적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과의 APA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아시아 국가들과의 APA 수가 증가하여 쌍방 APA의 평균 협의기간이 29.1개월로 증가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국제 동향**

신규 도입된 영국의 우회이익세(Diverted Profit Tax 이하 "DPT")와 미국의 세원잠식방지세(Base Erosion and Anti-abuse Tax, 이하 "BEAT")로 인해 일본 다국적기업들의 쌍방APA 신청이 증가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공격적인 조세전략을 고려하지 않으며, 대규모 세무조사나 예기치 못한 세무조사를 회피하고자 하는 성향을 보입니다.

손금산입이 가능한 계정을 통해 대기업들이 영국 외로 이익을 반출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DPT의 세율은 25%로, 19%를 부과하는 법인세를 고려하면 징벌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영국의 DPT는 특수관계자 간의 상품 및 서비스 거래의 가격을 조정하여 영국 내에서 부과되는 법인세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 **BEPS의 영향**

이미 미국에서의 사업을 위해 일본과 미국간 조세협약에 따른 APA를 체결한 일본 다국적기업들은 OECD의 BEPS 프로젝트를 고려하여 APA 갱신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이 조세협약을 맺고 있는 중국과 같은 개발도상국들은 BEPS 국가별 보고서를 검토하면서 공격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OECD의 15개 BEPS 계획의 일부인 과세당국 세정 투명성과 위험 평가 도구를 제공하기 위한 국가간 정보교환협정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국가별보고서를 6월부터 교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일본 다국적 기업들 사이에서 개발도상국의 과세당국들이 유리한 일부 금융 정보만을 수집하고 이러한 내용에 근거한 이전가격 세무조사를 실시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 **가치산정이 어려운 무형자산에 대한 규정(Hard-to-Value Intangibles Rules, 이하 "HTVI")**

일본 재무부는 2019 재정개혁의 일부로 일본 이전가격 규정에 논란이 많은 OECD의 HTVI 평가에 대한 접근법을 포함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HTVI 시스템은 사후 결과를 기반으로 소득조정을 할 수 있는 국세청의 권한으로 이중과세가 발생 할 수 있다고 많은 조세변호사와 회계사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HTVI 접근방식의 도입은 무형자산의 소득을 산출할 때에 납세자와 당국 모두에게 많은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NTA가 무형자산의 이전거래 시점에서 일정기간이 지난 후 높은 이익이 발생할 경우, 다국적 기업이 신고한 무형자산 이전거래의 가격이 부정확하다고 일방적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일방 APA

대부분의 일본 소재 다국적기업은 쌍방 APA를 신청하고 있으나, 일부 기업들은 쌍방 APA 체결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부담스러워하여 일방 APA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일방 APA 신청 시 기업은 해외 과세당국에 어떠한 자료도 공개할 의무가 없지만 BEPS 규정에 의하여 일방 APA의 체결 유무를 공개하여야 합니다.

[Privacy](#) | [Legal](#)

INTERNAL USE ONLY

27th Floor, Gangnam Finance Center, 152, Teheran-ro, Gangnam-gu, Seoul, Korea

© 2017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the Korea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kpmg.com/socialmedia](https://kpmg.com/socialmedia)



[kpmg.com/app](https://kpmg.com/app)

